

#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

**제1조 (목적)**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학위수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의 작성, 제출, 심사에 관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논문영역)** 논문에 다음과 같은 논문영역을 둔다. <개정 2011. 6. 24., 2012. 4.26.>

- ① 구약학    ② 신약학        ③ 조직신학    ④ 기독교윤리학
- ⑤ 교회사    ⑥ 실천신학    ⑦ 선교신학    ⑧ 기독교교육학
- ⑨ 교회음악학 ⑩ 사회복지학 ⑪ 상담학    ⑫ 보육학    ⑬ 유아교육학

**제3조 (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신청)** ①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학생은 희망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과 전공주임교수가 협의하여 배정하되,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 6. 24.>

1. 대학원 박사과정  
- 3학기이상 등록하고 12학점이상 취득한 자
2. 대학원 신학과  
- 2학기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6. 4. 6.>
3. 대학원 교회음악과, 기독교교육학과, 사회복지학과, 보육학과, 유아교육학과  
- 2학기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자
4. 신학대학원  
- 5학기이상 등록하고 60학점이상 취득한 자(인정학점 포함)<개정 2014. 12. 27.>  
- 삭제 <신설 2007. 3. 1><개정 2014. 12. 27.>
5. 사회복지대학원  
- 3학기이상 등록하고 15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6. 4. 6.>
6. 상담대학원  
- 4학기이상 등록하고 21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6. 4. 6.>
7. 설교대학원  
- 2학기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6. 4. 6.>
8.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
- 3학기이상 등록하고 12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6. 4. 6.>
9. 신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
- 2학기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6. 4. 6.>
10.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의 전임교수 중에서 배정한다. (개정 2016. 1. 20)<개정 2016. 4. 6.>
11. 본 대학의 전임교수이상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지도를 의뢰할 경우는 부교수 급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.<개정 2016. 4. 6.>

② 원칙적으로 논문지도 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원을 지도교수의 사유서와 함께 대학

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조** (논문계획서 공개 발표 신청 및 제출자격) 논문지도교수가 확정된 학생은 논문 계획서 공개 발표회용 자료를(A4용지 6~8매 정도 및 디스켓제출)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대학원 박사과정

- 4학기이상 등록하고 21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6. 4. 6.>

② 대학원 신학과

- 3학기이상 등록하고 15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6. 4. 6.>

③ 대학원 교회음악학과, 기독교교육학과, 사회복지학과, 보육학과

- 3학기이상 등록하고 15학점이상 취득한 자

④ 신학대학원

- 5학기이상 등록하고 75학점이상 취득예정자 <개정 2011. 2. 25., 2014. 12. 27.>

⑤ 사회복지대학원

- 3학기이상 등록하고 15학점이상 취득한자<개정 2014. 12. 27., 2016. 4. 6.>

⑥ 상담대학원

- 4학기이상 등록하고 21학점이상 취득한자<개정 2014. 12. 27., 2016. 4. 6.>

⑦ 설교대학원

- 3학기이상 등록하고 15학점이상 취득한자<개정 2016. 4. 6.>

⑧ 신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

- 4학기이상 등록하고 21학점이상 취득한 자<개정 2014. 12. 27., 2016. 4. 6.>

**제5조** (논문계획서 발표) ①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계획서 발표회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교학과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계획서 제출은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4. 6.>

③ 석.박사 학위 논문계획서 발표회는 전반기는 5월중, 후반기는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한다.

**제6조** (논문계획서 허가) ① 심사위원회는 논문 계획서 및 공개 발표회를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학원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결정과 논문계획서 발표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논문제목은 논문계획서 공개발표회에 합격한 자에 한해 위원회에서 허가한다.

**제7조** (학위청구논문초고 제출 및 자격)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초고와 논문연구윤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.<개정 2012. 4. 26., 2013. 9. 1., 2016. 4. 6.>

① 석사과정

1. 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

2.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(예정)한 자

3.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4.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

② 박사과정

1. 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
2.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(예정)한 자
3.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4.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
5.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  - 가. 일반학술지(교내학술지)에 1인 단독 1회 투고 게재한다.
  - 나. 가. 사항에서 단독게재가 아닐 경우 (공동연구)전국규모학회에서 발표 1회 추가한다.

③ 학위청구논문 초고제출(지도교수용)은 1학기는 3월 하순까지, 2학기는 9월 하순까지 1부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** (논문제출 절차) 학위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석사과정

1. 학위논문제출승인서(소정 양식)
2. 석사학위청구논문(심사용: 대학원에 제출)...3부
3. 학위청구논문지도확인서 - 지도교수의 지도(최소 10회 이상)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박사과정

1. 학위논문제출승인서(소정 양식)
2. 박사학위 청구논문(예비 심사용: 대학원에 제출)...3부
3. 학위청구논문지도확인서 - 지도교수의 지도(최소 10회 이상)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.

**제9조** (학위청구논문 심사본 제출)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(예비 및 본 심사)를 위하여 표절심사 필증 및 원고(석사학위는 3부, 박사학위는 5부)를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2. 27.>

**제10조** (논문 심사본 제출 자격심의) 대학원 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·인준한다.

**제11조** (심사위원 배정) ① 논문계획서 공개발표 심사위원 배정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과정 :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(대학원장, 전공주임교수, 지도교수)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,
2. 박사과정 :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(대학원장, 전공주임교수, 지도교수, 교수 2인)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3. 심사위원의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대학원장이 선정하는 교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논문심사위원 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하며, 대학원장이 이를 위촉한다.

1. 석사과정

가.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3조에 규정한 지도교수와 동등하며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.

나.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은 3인으로 하며 논문의 지도교수는 자동으로 심사위원이 된다.

다. 석사과정의 심사위원 3명중 1인은 가능한 한 인접 전공이나 관련학과의 교수로 할 수 있다.

2. 박사과정

가. 예비심사 심사위원 : 대학원장, 전공주임교수, 지도교수,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학내교수 2인의 위원으로 내부 심사를 한다.

나. 본심사 심사위원 :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교수1인, 전공주임교수, 지도교수, 외부교수 2인을 위원으로 심사를 한다.

③ 전항의 위원 중 1인은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하며,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. (단, 논문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)

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심사위원이 질병,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,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
**제12조** (심사기간 및 진행) ① 석사과정

1. 심사기간 : 2주간 실시

2. 심사일시 및 장소 선정 : 심사위원 및 학과별로 진행

② 박사과정

1. 심사기간 : 3주간 실시

2. 심사일시 및 장소 선정 : 심사위원 및 학과별로 진행

**제13조** (논문심사의 방법) ① 석사과정

1.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“서류 및 구술시험”으로 한다.

2.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, 논문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창의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.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분, 역본, 모형,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.

3. 학위논문의 심사는 소정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.

② 박사과정

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,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.

1. 예비심사

가.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.

나. 심사위원은 논문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가 있다.

다.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,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며,

수정·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내,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.

라.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2. 본심사

가.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합격여부를 판정 한다.

나. 심사 상 필요할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또 모형, 기타 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다.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.

### 제14조 (논문심사횟수) ① 석사과정

학위논문 심사는 논문계획서 공개심사 및 본심사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.

#### ② 박사과정

학위논문 심사는 논문계획서 공개심사 및 예비심사, 본심사 등 3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.

### 제15조 (논문심사판정) ①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 평가는 심사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.

②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 평가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의 심사위원 각각 100점 만점에 5분의 4이상, 80점 이상은 합격으로 한다.

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취급방법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 성과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.

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16조 (학위논문의 재심사) ① 논문심사는 2주일이내에 재심사를 할 수 있다.

②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재학년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③ 논문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.

### 제17조 (심사결과보고)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18조 (논문제출부수)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규정에 따라 출판하고 석사는 8부, 박사는 8부를 제출하되 그중 5부는 양장 제본하여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논문심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이 들어있는Data Diskette (흔글HWP 및 MS워드 형태의 파일)와 저작물 이용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4. 6.>

### 제19조 (출판학위논문의 체제) 출판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이 정한 논문작성법에 의하며,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한다.

**제20조** (논문의 공표)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. 그러나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21조** (논문최종작성) 논문 제출자는 제본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·보완하여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의 최종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22조** (내규의 개·폐) 이 내규의 개정 및 폐지는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<신설 2012. 4. 26.>

부 칙

내규는 198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내규는 198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내규는 198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내규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내규는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개정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3조(논문계획서 공개발표 신청 및 제출자격) ④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조(논문영역) ⑫항 및 제3조 ①항 3호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제7조(학위청구논문초고 제출 및 자격) ②항 5호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제3조(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신청) ①항 4호는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제4조(논문계획서 공개발표 신청 및 제출자격) ④항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- ④ (시행일) 제9조(학위청구논문 심사본 제출)는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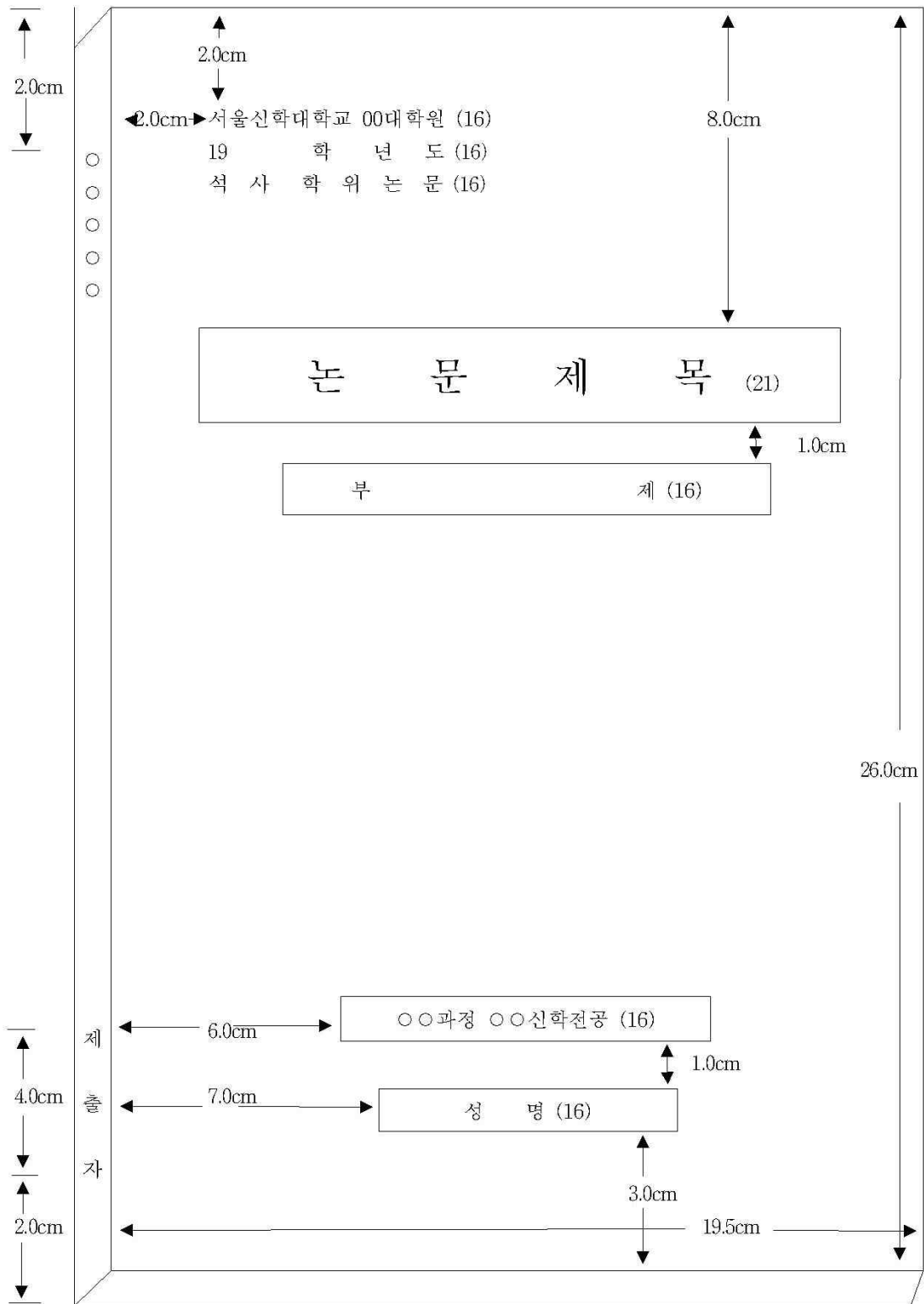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제3조(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신청) ①항 7호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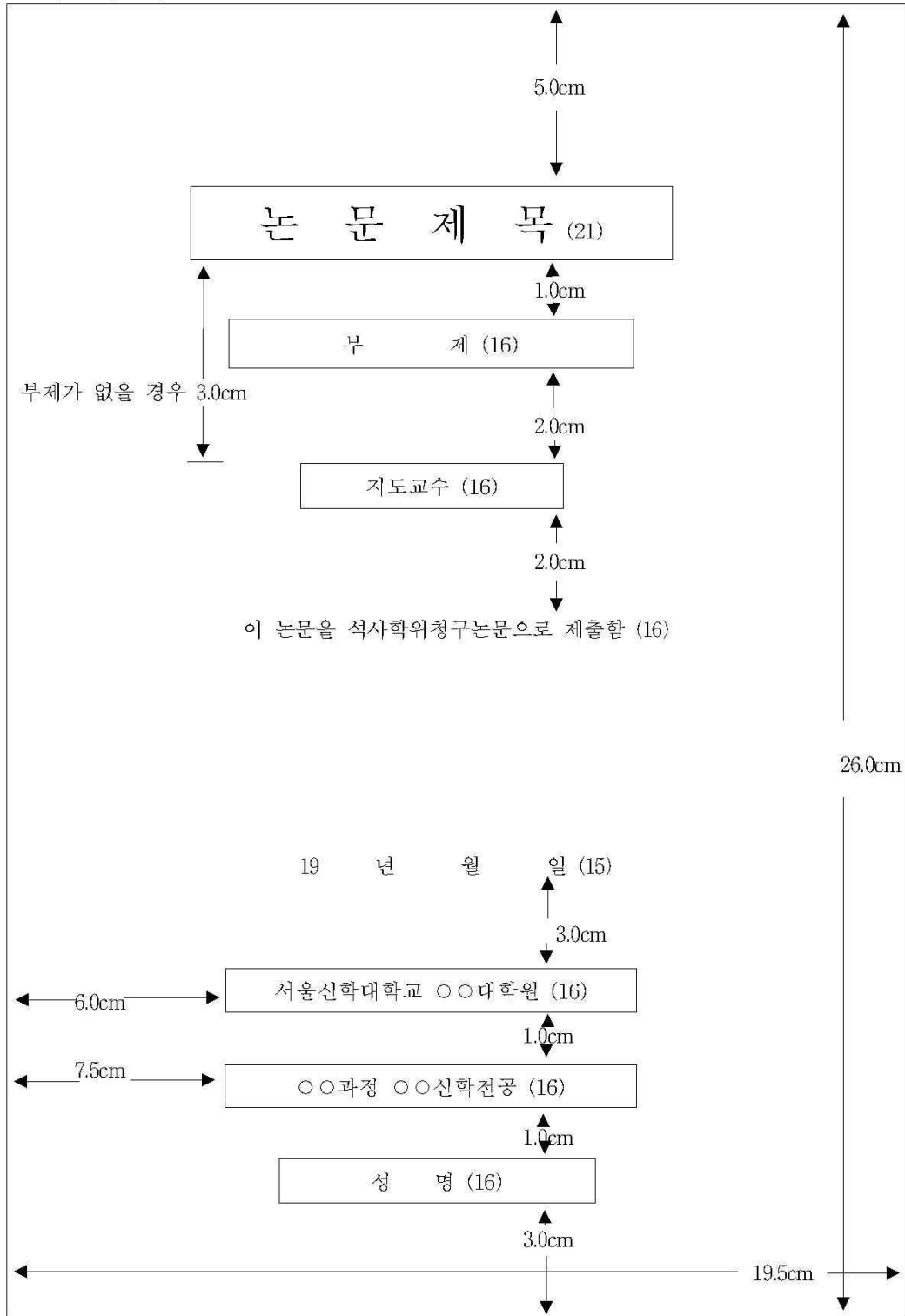


<양식 1. 논문표지 및 책등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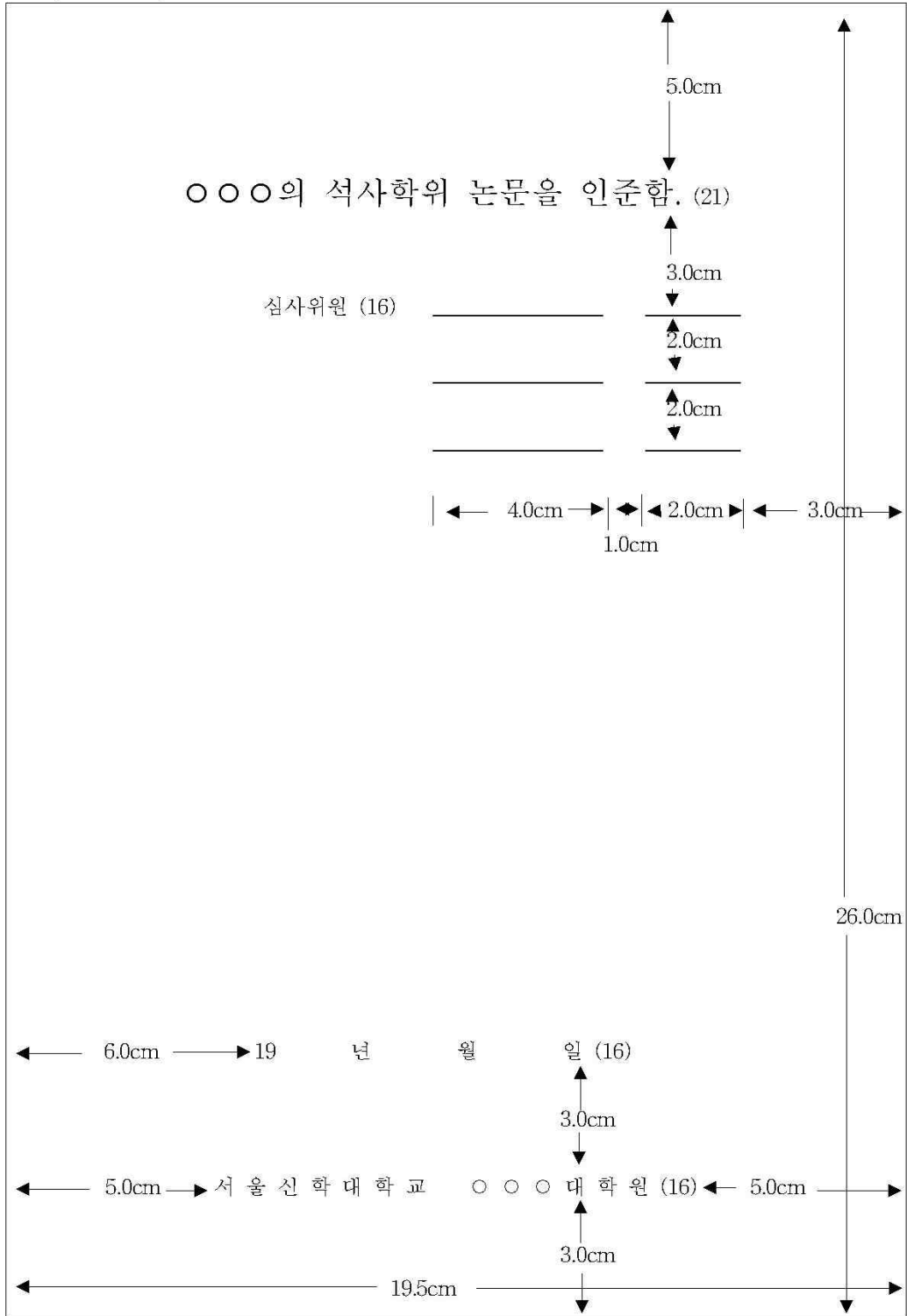
( )안의 숫자는 인쇄시 폰트 크기입니다.

<양식 2. 속표지>



( )안의 숫자는 인쇄시 폰트 크기임.

<양식 3. 인준서>



( )안의 숫자는 인쇄시 폰트 크기임.